

#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선수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25. 7. 21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(이하 “시장장애인체육회”라 한다.) 규약 제32조에 따라 선수의 권익 보호와 증진, 건전한 운동환경의 조성,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을 통한 존경받는 체육인상의 확립과 패럴림픽 정신의 보급·확산을 위하여 설치되는 선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시장장애인체육회에 정가맹된 종목별 경기단체(이하 “가맹단체”라 한다.)에 등록된 선수에 적용한다.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·심의한다.

1.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및 각종 대회 관련 선수의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 및 패럴림픽 정신의 보급·확산
2. 종목별 중앙 가맹단체 선수위원회의 교류 및 협조에 관한 사항
3. 선수의 권익 보호, 증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
4. 선수등록 및 경기분야 제도 개선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
5. 선수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및 조정에 관한 사항
6. 은퇴 선수 프로그램 개발 등 은퇴 선수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
7.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
8.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

**제4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인
  2. 부위원장 1~3인
  3. 위원은 시장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의 선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정기등록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 위원 선임년도 기준 각 가맹단체에 2년 이상 연속 선수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.
-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전문체육부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

**제5조(상임위원회 설치)**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

를 구성할 수 있으며, 상임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 안건을 심사 결정한다.

② 상임위원회는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인(선수위원장)

2. 위원 4인(선수위원 중 선수위원장 추천 2인, 위원 추천 2인)

③ 상임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 상임위원회의 결정 시에는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.

**제6조(위원의 위촉)** ① 위원은 가맹단체에서 선출된 자로 회장이 위촉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.

② 위원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며, 부위원장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위원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**제8조(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가맹단체의 정기 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
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9조(위원의 해촉)**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
2.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3.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4. 위원으로 선임된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

5. 해당 종목에서 직위를 잃었을 경우

**제10조(회의소집)** ① 위원장은 시장·군·구청 체육회의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정기위원회를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로 서면심의를 진행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.

- ④ 위원은 대리인을 통해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 다만, 질병·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5일 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.

**제11조(의결정족수)**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2조(제척 및 회피)** 위원은 본인,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**제13조(회의록)** ① 회의록의 기록은 간사가 담당하며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.

- 1. 회의일시 및 장소
- 2. 출석위원 명단
- 3. 심의 안건
- 4. 의결 내용

② 작성된 회의록은 참석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.

**제14조(가맹단체 및 자치구장애인체육회 선수위원회 설치 의무)** ① 가맹단체 및 자치구장애인체육회는 선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. 단, 자치구장애인체육회는 정가맹단체로 가맹단체를 승인한 경우 선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며, 가맹단체는 총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선수대표를 선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총회 구성 시 선수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.

② 가맹단체 선수위원회 운영규정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단체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되 시장장애인체육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가맹단체 및 자치구장애인체육회의 선수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등록선수 자질 향상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사무국 설치)** ① 위원회는 장애인 선수(은퇴 선수를 포함한다)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
② 시장장애인체육회는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세 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